

# 지방재정지원공제규정

2012. 12. 26 제정 2015. 12. 8 개정  
2019. 6. 25 개정 2026. 3. 2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지원공제사업에 필요한 지방재정지원공제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조성, 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 및 환수와 회비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원금의 지원 및 환수와 회비 납부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재원의 조성)** 지방재정지원공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비
2. 재해복구, 관공선, 손해배상 공제적립금중 일부 활용
3. 기타 수익금

**제4조(회비)** ①회비는 지원금 지원 당시의 한국은행에서 결정·발표한 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회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산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다만, 회비요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8. 26.>

②회비수입액 및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액 등은 필요경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의 처분은 공제회 정관 및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금의 배정)** ①정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당해연도의 환수금과 회비수입액 및 기타 수익금 등을 기본으로 하여 자금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③매년도 지방재정지원 공제적립금 배정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즉시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의 변경 및 취소)** ①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 여건 변경 등의 사유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당해 회원의 장은 지원대상의 변경 또는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원)** 회원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지방채 배정액) 지원을 신청하되, 전액 또는 분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3.>

**제8조(지원금 상환)** ①지원금을 지원받은 회원은 2년거치 10년 범위내 균분하여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원하는 경우 거치기간중 또는 상환기간의 만료이전이라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②지원금의 상환액은 공제회의 납부고지서에 의해 다음 각호의 해당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환할 경우에는 회원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지원분은 매년도 5월 31일

2.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지원분은 매년도 11월 30일

③지원금 상환고지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미납액에 대하여 연 2.5%의 추가회비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납부기한 이전 공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까지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④ 삭제 <2019.6.25.>

**제9조(위임 및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197호, 2012. 12.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에 관련되는 정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배정 및 지원한 청사정비기금의 특별회비(연 3%)는 종전의 「공공청사정비공제규정」에 의한다.
3. (청사정비적립금명칭변경) 이 규정 시행전에 「공공청사정비공제규정」에 의한 “공공청사정비적립금”은 이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지원 공제적립금”으로 본다.
4.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공공청사정비공제규정」을 폐지한다.
5. (다른 규정의 개정) 공제회의 다른 규정 중 “공공청사정비”를 “지방재정지원”으로, “공공청사정비기금”을 “지방재정지원공제적립금”으로 “공공청사정비특별회비”를 “지방재정지원회비”로 한다.

**부 칙 <규정 제222호, 2015. 12. 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회비요금 상한제 적용특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한 지원금의 경우도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60호, 2019. 6. 25.>**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19호, 2026. 3. 23.>**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재정지원공제규칙

2012. 12. 28 제정 2014. 1.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지방재정지원공제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지원공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금 지급, 지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서 제출)** ① 지방재정지원공제규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배정통보를 받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사정비공제사업

가. 청사정비계획서(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 서식)1부

나. 지방재정지원적립금 차입 승인서 사본 1부

2. 지역개발공제사업

가. 지역개발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1부

나. 지방재정지원적립금 차입 승인서 사본 1부

3. 지방관공선건조비공제사업(2014. 1. 1 신설)

가. 지방관공선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1부

나. 지방재정지원적립금 차입 승인서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정비 계획서를 제출한 회원은 공사시행 및 건물매입에 착수한 후, 지역개발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회원은 사업시행 후, 지방관공선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 회원은 지방관공선 조달 계약 후,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2014. 1. 1 개정)

**제3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별 지원금의 지급방법과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사정비지원금 지급

가. 신·증축비, 에너지절약 개보수비의 지급방법 및 구비서류

1) 지급방법

- (1) 지급시기: 공사를 착공한 경우
- (2) 지 급 액: 배정액 전액

2) 구비서류

- (1) 착공계 사본 1부.
- (2)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1부
- (3) 청사정비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나. 매입비의 지급방법 및 구비서류

1) 지급방법

- (1) 지급시기 :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지 급 액 : 배정액 전액

2) 구비서류

- (1) 매입계약서 사본 1부
- (2) 건물(전경) 사진 1부
- (3) 청사정비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2. 지역개발지원금 지급

가. 지급방법 및 구비서류

1) 지급방법

- (1) 지급시기 : 사업은 공사 착공후, 기타 대상은 계획서 제출후
- (2) 지 급 액 : 배정액 전액

2) 구비서류

- (1) 착공계 사본 1부(기타 대상은 제외)
- (2) 공사계약서 사본 1부(기타 대상은 제외)
- (3) 지역개발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3. 지방관공선지원금 지급(2014. 1. 1 신설)

가. 지급방법 및 구비서류

1) 지급방법

- (1) 지급시기 : 조달 계획서 제출 후
- (2) 지급액 : 배정액 전액

2) 구비서류

- (1) 관공선건조 및 수선 계약서 사본 1부
- (2) 관공선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제4조(지원금 상환기간)** 지원금의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범위내에서 사업 성격 및 공제회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금 조기상환)** 지원금을 지원받은 회원이 원하는 경우, 거치기간중 또는 상환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액 납부를 희망하는 날의 30일전에, 청사정비지원금 상환은 청사정비지원금 조기상환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지역개발지원금 상환은 지역개발지원금 조기상환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지방관공선지원금 조기상환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공제회에 신청하여야 한다.(2014. 1. 1 개정)

**제6조(사후관리)** ①공제회는 회원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실태와 공사 추진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관련서류의 제출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지원받은 지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타 부당한 처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실태점검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 **부 칙(2012. 12. 28. 규칙 제214호 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칙의 개정) 공제회의 다른 규칙중 “공공청사정비” 를 “지방재정 지원” 으로 “공공시설정비” 를 “지방재정지원” 으로, “공공청사정비기금” 을 “지방재정지원공제적립금” 으로 “공공청사정비특별회비” 를 “지방재정지원회비” 로 한다.

#### **부 칙(2014. 1. 1. 규칙 제242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청사정비(신축) 계획서

### 1. 청사 현황

청사

소재지	부 지		건 물		건축 년 도	구 조	현 재 상 태
	면 적	국공유구분	본 관	부속건물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 2. 신축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소재지									
부 지	계	기존부지	추가(이전) 부 지	추진 상황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매입	질충중	사용승락	미정	기타	
건물 및 구조	계		본 관	부속건물		구 조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재 원 확 보	총공사비		정비기금	자체재원		자체재원확보여부			
공기 사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 원 금 신청계획	신청구분		착공분	기성분		계			
	신청금액								
	신청예정일		년 월	년 월					

위와 같이 청사정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

직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청사정비(매입) 계획서

### 1. 청사 현황

청사

소재지	부 지		건 물		건축 년 도	구 조	현 재 상 태
	면 적	국공유구분	본 관	부속건물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 2. 매입 계획

(단위: 천원)

건 물	위 치	구 조	면적(m <sup>2</sup> )	금 액
부 지	면적(m <sup>2</sup> )		금 액	
재원확보	총공사비	공제회지원금	자체재원	자체재원확보여부
지 원 금 신청계획	신 청 금 액			
	신 청 예 정 일			

위와 같이 청사정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

직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청사정비(증축) 계획서

### 1. 청사 현황

청사

소재지	부지		건물		건축년도	구조
	면적	국공유구분	본관	부속건물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사용실태	총소요면적		현사용면적		추가소요면적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 2. 증축 계획

(단위: 천원)

구분	내용					
증축구분	본관상부		별동		기타	
증축면적	m <sup>2</sup>					
재원확보	총공사비	공제회지원금	자체재원	자체재원확보여부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금 신청계획	신청금액					
	신청예정일					

위와 같이 청사정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

직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청사정비(에너지절약 개보수) 계획서

### 1. 청사 현황

청사

소재지	부 지		건 물		건 축 년 도	구 조	현 재 상 태
	면 적	국공유구분	본 관	부속건물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 2. 청사에너지절약 개보수사업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본 관		부속건물		기타	
개보수 면적	m <sup>2</sup>					
범 위	구조보강	기계·설비	전기	인테리어	기 타	
재원확보	총공사비		공제회지원금		자체재원	자체재원확보여부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 원 금 신청계획	신청금액					
	신청예정일					

위와 같이 청사정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

직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지역개발사업계획서

□ 사업명 :

(단위:천원)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주요사업 내 용				
기대효과				
재원확보	총사업비	공제회 지원금	자체재원	자체재원 확보여부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 원 금 신청계획	신청금액			
	신청예정일			

위와 같이 지역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

직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2조제1항제3호 관련)

### 지방관공선 조달 계획서

(단위: 천원)

공 사 명 (조 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준 공 금 액		
계 약 일 자		착 공 일 자		
준 공 기 한		준 공 일 자		
준공검사일자		참 고 사 항		
재원확보	합 계	공제회지원금	자체재원	자체재원확보여부
지 원 금 신청계획	신 청 금 액			
	신청예정일			

위와 같이 지방관공서 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

직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